

Ma. d. 5

공청회 자료집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중강당)

시간: 1995. 1. 20(금) 2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국평화통일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노동정책연구소, 향린교회, 카톨릭 노동사무전국협의회, 국민회의,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구리노동상담소, 천주교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연합, 민중정치연합, 중국노동자센타, 전국연합인권위, 한국노총, 노동인권회관, 영등포 산업선교회, 다일공동체, 전국노련, 민예총, 전보정당추진위,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회년선교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영주군농민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교회 여성연합, 경실련 기독청년협의회.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장소: 기독교연합회관 4층(중강당)

시간: 1995.1.20(금) 2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국평화통일불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 천주교인권위,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노동정책연구소, 향린교회, 카톨릭 노동사목전국협의회, 국민회의,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 한국민주노동자연합,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구리노동상담소, 천주교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연합, 민중정치연합, 종국노동자센타, 전국연합인권위, 한국노총, 노동인권회관, 영등포 산업선교회, 다일공동체, 전국노련, 민예총, 진보정당추진위,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회년선교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영주군농민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한국교회 여성연합, 경실련 기독청년협의회.

<진 행 순 서>

1. 발제

사회: 이만열(희년선교회 대표, 숙명여대 교수)

1. 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

김재오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향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 소장)

2. 토론

토론자:

이광택(국민대 교수)

윤우현(민주노총(준)집행위원)

김선수(변호사)

유종성(경실련 정책실장)

최상덕(YMCA 중계실 간사)

남인순(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홍성진(한국노총 연구위원)

김혜성(NCC, 성남교회협의회 인권위원장)

김동훈(경불련 사무처장)

이홍지(노동부 직업안정국장)

이금연(천주교 수원교구 사회사목실 대표)

이효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기조실장)

통상산업부 중소기업국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3. 뒷풀이 및 공대위 대표자회의

- 이후의 방향모색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방안

朴錫運(노동정책연구소장)

1. 문제의 제기

전 국민의 충격속에 진행되던 외국인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이 9일만인 1월 17일 해산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농성이 해산되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명동성당 농성돌입시 제기되었던 여러가지 문제중, 외국인연수제도의 본질적 차원의 구조적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번 기회에도 이런 구조적 모순을 해결할 제도개선을 실현시키지 못한다면, 임시봉합된 문제가 또다른 형태로 터져나와 제2, 제3의 사태발생으로 진전될 것이다.

사실 현행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제도는 이름만 "기술연수"이지 실제에 있어서는 기술연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작업에 투입되어 단순노동을 하고 있어서, "편법적 외국인 노동력 도입"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저임금 단순노동력을 쉽게 조달하려는 안이한 발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번 농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심각한 인권침해사태등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따라서 문제가 노출된 이 시점에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조립하기 위해서는 기술연수제도를 외국인력 도입문제와의 연관성 속에서 조망해보는 데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2. 외국인력 도입문제

가. 합법 도입여부

1) 기업주 등 재계에서는 현재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이 심각하니 저임금의 외국인노동력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기업주들은 우선 필요하니 저임금의 "노동력"만 쓰고 싶겠지만, 노동력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니,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측면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을 도외시하고 저임노동력에만 한눈 팔다보면 둘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2) 먼저 무분별한 외국인노동력 도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량실업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최근 경기가 호황세를 유지하지만 언제라도 다시 불황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실업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과정에서 기술혁신과 자동화시설등의 도입 및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등으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까지 감안하면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다. 이른바 "인력난" 문제도 달리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왜곡된 교육제도 및 노동시장구조로 밀미암아 인력배분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이고, 이런 마찰적 성격의 인력부족현상은 교육제도개혁 및 노동시장기능의 활성화 즉 직업안정기능의 획기적 강화로 해결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시사점이 많다.

< 유휴노동력의 활용 가능성 >

경제활동참가율	노동공급 증가분	현재 부족인원(통산치)
2 % 상승시	939천명	300천명
1 % 상승시	611천명	300천명

계층별	증가분	비고
15-19세 경제활동참가율(13%→18%) 및 취업률(88%→93%) 각 5% 증가시	159천명	취업자 순증가분
무급 가족 종사자 비중 4% 감소시(11%→7%)	82천명	타부문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배치 인력
자영업주 비중 5% 감소시 (28%→23%)	273천명	타부문으로 이전할 수 있는 재배치 인력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국내 유휴인력활용가능성에 대한 국제 비교 >

한편, 언젠가 닥쳐올 남북인력교류시대나 남북통일시대에 새로 노동시장에 등장할 풍부한 양의 북한 노동력에 대한 고려를 하더라도 실업문제나 고용안정문제를 가벼이 보는 것은 파멸적 결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참고 : 독일 통일후의 상황)

둘째, 값싼 외국 인력이 도입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국내 고용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더욱 고착되고, 또한 국내 고용시장의 질서가 엄청나게 교란될 위험이 현존한다.

셋째, 한국노동자들의 노조조직력이나 노동조건에 있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값싼 외국인노동력의 범람은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조건향상을 발목잡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로 조직되기가 쉽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자나 기술연수생이라는 신분적 제약도 있음)의 다수 존재는 이미 광범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와 함께 노조의 조직력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고, 또한 단체행동에도 결정적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분할통치를 통한 노동통제의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넷째, 단일민족사회로 오랫동안 살아온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력의 대량 도입으로 생길 수많은 문제들을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상태이다. (공격적 민족주의의 폐해)

장기체류로 인한 결혼, 2세 출생, 2세 교육 문제가 속출할 것이고, 주거문제나 미비된 사회보장의 확산에도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한국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즉, 한국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이나 산업구조개선에도 방해가 되고,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전망에서도 도리어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는 종전에는 저임금에 바탕을 둔 단순조립형 수출주도 경제였지만 지금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런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경쟁력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우선 입맛에 달콤한 저임금노동력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산업구조개선을 통해서 경제성을 갖춰내야 한다. 그런데 저임금의 외국인노동력을 계속 공급해나가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에 마약을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3) 결국 외국인력의 도입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현단계에서의 무분별 도입은 곤란하다.

나. 여러 방안의 검토

1) 금지와 강력 단속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외국인력 도입을 종전대로 계속 금지시키고, 단속을 강력하게 펼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다른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점이 명백히 확인된다. 아무리 입국심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원천봉쇄할 수가 없고, 이미 입국해 있는 각 사업장에 박혀버리면 단속불가능한 상태로 되고, 단속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문제가 음성화되어 폐단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2) 기술연수제도도 실패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이런 난점들을 모두 해결해주는 방안으로 정부당국에서는 산업기술연수제도의 대폭 확

대 방안을 찾아내었지만, 이 또한 편법일 뿐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우선 필요하니까 편법으로(명목만 "연수"이지 실제로는 편법적 외국인노동력 도입임) 들여다 사용하고, 나중에 우리 경제에 필요없게 되면 그때가서 내보내면 될 것 같지만 사태진행은 그리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선진각국에서 모두 실패한 역사적 경험에 있다(통독후의 신나치주의자들에 의한 외국인테러상황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도 이미 상당수 연수생들이 지정된 연수사업장을 탈출하여 불법체류자로 흘리가고 있고, 또 연수기간이 끝났을 때 모두 돌아간다는 보장은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불법체류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기간종료 무렵에도 여전히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업종은 존재하기 마련이어서 그때는 더욱 자연스럽게 연수기간 연장을 외치게 될 것 이기 때문이다.

편법은 편법을 낳기 마련이며, 또 합법적 도입보다 더욱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 현재도 "불법체류" 노동자보다 훨씬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연수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더욱 큰 문제점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것은 "연수"이지 "외국인 노동력도입"이 아니'라면서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현실"인데 머리속이나 입으로만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가는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태를 뒤쫓아가기도 힘들 수 밖에 없다.

3) 이미 현실적으로 국내에 외국인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6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 노동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산업기술 연수생도 3만명 가까이 정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고려되어야 한다. 혹자는 이들의 존재 때문에 기정사실화하여 합법도입하자는 주장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들의 존재는 현단계에서의 정책결정을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할 사유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 합법도입 결정하면 겉잡을 수 없는 대량유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어울려 살 마음가짐과 초보적 준비조차 가다듬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들여다 사용하고는 나중에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내팽개치겠다는 것은 일종의 죄악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혹자는 한시적 도입 또는 제한적 도입을 주장하지만, 한시적 도입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한시적 도입으로 시작하지만 결과적으로 장기 체류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제한적 부문의 도입도 전부문으로 확산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4) 중국교포에 대한 우대도 득책이 아니다.

중국 교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일용 상대적으로 폐단이 적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차라리 해외 교포의 모국 귀국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이 차별대우를 방지하고 또 이른바 "인력난"도 해소되는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안도 통일시대 복한 노동력의 등장과 연결해서 신중하게 연구, 검토, 판단해야지 졸속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특히 같은 조건에서 중국교포만 우대하는 방식은 민족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국제화시대에 현명한 방법이 아님이 지적되어야 한다. 남미출신의 일본인 2,3세에게는 특혜를 주는 일본식 협통주의는 비열한 민족차별정책(그 희생자는 주로 재일동포임)이라 아니할 수 없는 바, 우리나라가 이런 일본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5) 결국 무분별한 외국인력도입이나 편법도입 모두 금물이다. 또한 금지와 강력단속 방침도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다. 올바른 외국인력 정책의 모색

1) 외국인력을 도입하려면 “정당한”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사정상 부득이 외국인노동력을 도입 할 수밖에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이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는 각오가 전제되어야 하고 반드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도입해야 한다.

명목이 어떠하든지간에 도입되는 외국인력은 한국노동자와 동등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보장의 동등수혜, 사업장 이동의 자유(사실상 강제노동의 금지), 모집과 송출 과정의 공공성 보장(송출업체 횡포의 제도적 방지) 및 노조가입보장 등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대전제하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다. 편의주의는 성공하기도 어렵거니와 국제화시대의 중장기적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동력”만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인만큼 이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내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가 다른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지혜를 터득하고 다원주의적 사회로 변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사면과 합법적 신분부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대책기조를 세우고 대응태세를 갖추기도 전에 벌써 5-6만명 가까운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상태에서 한국경제에 숨은 일꾼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 외국인노동력을 도입하기에 앞서 이미 우리 사회에 현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우선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3)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이 필수적이다.

사실 이번 취업연수생 문제만 보더라도 공개토론과정이나 국민적 합의형성과정을 일체 도외시한 채 몇몇 정책당국자들이 밀실에서 마치 이권주듯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망신까지 당하게 된 것이다.

새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실태와 대안에 대한 다각적이고 치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마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개토론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번에는 임기응변적,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중장기적 정책기조를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4) 한편, 국민적 합의과정에서 또다른 측면에서의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그 연후에 비로서 정당하고 합법적 절차를 통해 도입해야 한다.

3. 취업연수제도의 개선방안

가. 취업연수생들의 참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이번에 문제가 표면화된 이상 획기적 제도개선을 하여야 한다.

1) 노사공의 3자구성되는 공익기관에서 주관해야 한다.

연수생 도입주관기관이 사용자단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맡아서는 안된다. 반드시 공익적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노사동수의 대표가 함께 참여하고 여기에 공익인사들이 함께 참가하여 노사공익으로 구성되는 독립적 기관에서 주관하여야 한다.

2) 상대국가의 공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해야 한다.

현지송출기관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업에게 인력송출을 맡겨서는 안되고 반드시 해당국가의 국가기관 또는 무료의 공익기관에서 담당토록 해야 하며, 수수료 등에 있어서도 노동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강제되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국가는 인력송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모집광고할 때 표준문안을 주어서 그 내용을 포함하여 광고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도 해당국가에서 추천한 송출업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사기업체에서 담당하다보니 온갖 비리가 난무하기 마련이다. 또한 송출국에 감독관을 파견해서 감독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효성도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참고로 ILO 조약에서도 유료직업소개는 금지되어 있고 정부 또는 공익기관에서 무료로 직업소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료나 기타비용은 초청기업쪽에서 부담하든지 또는 한국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될 필요가 있다.

나.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이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상태임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비록 명목이 “연수”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근로의 실질관계에 있어서 이들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나라 노동법상 “근로자” 신분에 해당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재보상보험법 등 제반 노동법의 적용이 되어야 함은 실정법 해석상 분명하다.

2) 우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 근로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6. 9. 판결, 86다카 2920호)로 판시하고 있고, 또한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이 이수를 위해 대학부속병원의 전공의로 임명되어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서 의료행위를 해왔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왔다만 비록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가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로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위는 전공의로서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대법 1989. 7. 11. 판결 88다카 21296호)라고도 판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취업연수생의 경우도 우리 노동법상 "근로자"임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3) 그런데도 정부당국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수생이니 근로기준법등 노동법 적용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취지에도 위법한 법적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의 필요가 없이도, 정부당국이 위법한 법적용태도를 고쳐서 실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지침변경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4)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법도 당연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보장하면 임금수준문제는 당사자간 계약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자"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고, 또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되므로 산재보험이나 재해예방문제도 해결가능한 것이다.

다. 그외 인권침해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

1) 근로자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면, 노동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고, 강제연장근로나 휴일, 야간근로문제도 해소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또한 사업장 이동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기업도산, 해고나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 및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타사업장으로의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현재 제도로는 사실상 강제노동이 실시되는 것으로 블루라운드 논의나 사회조항 논의에서 핵심적 무역규제의 대상이 되는 강제노동금지에 저촉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3) 외출금지나 여권압류, 폭력행사 등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마땅히 금지

되고 또한 단속되어야 한다.

4) 불법중간착취를 일삼는 한국내 인력회사에 대한 단속과 실정법에 따른 구속처벌을 강화해서 중간착취가 배제되어야 하고 임금직접지불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 지불원칙이 명시되어 있고 또 중간착취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 실질적인 "기술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현재 2일간의 교육이나 중소기업중앙회 개선안의 1주일 교육안은 "기술연수"라고 할 수 없고, 실질적인 "기술연수"가 중요할 수 있다. 특히 동남아 각국과의 차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서도 "기술연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9개월간의 기술연수와 15개월간의 기능실습방식으로 절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능실습기간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고, 기술연수도 1/3 이상이 공부(座學)기간이 되도록 강제하여 3개월간의 공부와 6개월간의 실무연수로 구성되어 있어서(예외적으로 일정조건 하에 1/4 또는 1/5까지 변경가능), 최소한의 실질기술연수가 가능토록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다.

3) 기술연수기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마. 외국인노동자의 권리구제창구가 공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도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산업기술연수협력단에 중재위원회를 두어 중재하고 있지만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사공의 3자구성되는 공익적 기구에서 이를 담당하여 권리침해에 신속한 구제나 또는 고충처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이 합당할 것이다.

바. 이번 명동성당 농성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취업연수생들의 참담한 현실이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다행히 이번 기회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의지가 모아진다면 다른 민족과 함께 어울려 사는 교훈을 얻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잘못을 느끼고도 고치지 않고 또 다른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가장 우둔한 처사이므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제도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4. 결론

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

1) 이미 1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이 우리 사회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한국경제의 "숨은 일꾼"노릇을 톡톡히 하

고 있다는 현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어떤 경로든지 이미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슨일이 있더라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첫째로 그들도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같은 인간이라는 인도주의적 대원칙에서도 그러하고,

둘째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인간적 처우를 당하는 것에 눈감는다면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도덕적, 인도적 가치기준의 파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세째로 한국인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저하방지를 위해서도 이들의 노동조건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네째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원칙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2) 한편, 국제화시대에 종장기적 국익을 위해서도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 및 우리 사회의 미래상을 그려볼 때 미. 일 편중에서 동남아각국과의 유대강화나 경제협력이 필수적일 것으로 본다. 그런데 동남아 각국에서 소위 "친한파"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적대감과 증오감만 지니고 있다거나 또는 한국사회의 도덕성에 대해 일말의 신뢰도 갖지 않는다고 가정해보라. 그때가서, 수많은 돈을 들어서 천선교류사업은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걱정된다. 이는 우리 세대의 가능성을 팽개치는 정도를 지나서 우리 후세들의 가능성에까지 부담지우는 악덕이 될 것이다.

3) 지금 한국사람도 제대로 못 생겨주는데 외국사람 생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는 소박한(그러나 우둔한) 영터리 민족주의적 편견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나. 우리 민족의 경우도 일본, 미국, 서독, 중동 등지에 나가 일하다

가 많은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또 지금도 일본이 불법체류 노동자중 한국인이 1,2위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수많은 미국내 한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들의 존재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때 타국에서 당하면서 올분을 느꼈던 바로 그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되풀이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도덕적으로도 선진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당국의 제도적, 법적 정책전환이 긴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민간차원의 인권보호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종교인, 학생, 일반시민, 학자, 변호사, 의사, 자영업자 할것없이 양심있는 사람들, 뜻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변의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노력들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에도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또한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몇몇 사람들의 인간적 차원에서의 구조활동도 중요하지만 정책방향을 바로잡고 사회 전체의 흐름을 바로잡는 일은 더욱 중요한데, 개별 단체 차원의 각개약진방식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명백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민간인권구조단체간의 연대활동이 긴급하게 조직되고 실천될 필요가 있다.

발제문 2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실태와 문제점

김재오(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장)

1. 실태

1)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종류와 인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경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진다. 첫째 해외로 기술이전이나 해외현지에 지사를 설립하는 등의 자격을 가진 기업이,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해 기술훈련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이다. 둘째는 94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저임금노동력 제공차원에서 들어오기 시작한 3만명(2만-중소제조업체, 1만-신발·섬유업체)의 경우이다. 이번 1월 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한 이들의 경우 두번째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총 3만 3천명 정도이다. 이외에 5만 2천명 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까지 합치면 8만5천명에 이르는 외국인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공식통계이고,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부분을 합해 1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94년 1차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들어오기로 한 2만명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국가별 연수생 배정인원 및 월급(연수수당)은 다음과 같다.

국별	중국	필리핀	베트남	방글라	스리랑카미얀마	인니	파키스탄	태평	이란	
인원	8002	3008	2540	1600	1000	1000	930	800	800	300
월급	260불	260불	230불	200불	210불	230불	250불	230불	210불	?

2)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 들어온 연수생의 유입경로, 관리체계

가. 유입경로

한국정부(주무부처: 통상산업, 법무, 노동)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송출국 22개 인력송출 업체 - 송출업체 한국내 지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배정업체

나. 관리체계

송출한 인력 회사가 관리를 맡게 되어 있어서 모든 해외 송출업체가 한국내의 인력 관리회사를 지사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있음

3) 사례 중심으로 본 실태

가. 네팔인 취업연수생의 월 임금은 15만9천2백원(199달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책정한 외국인취업연수생의 공식월급은 미화200불(16만8천원)에서 260불까지 사이다. 한국에 온 10개국 연수생들은 이 사이에서 각 나라마다 다르게 책정된 금액 만큼의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런 쥐꼬리 만한 월급에서 또 인력관리회사라는 곳은 매월 11불씩을 인력관리비 명목으로 떼어가고 있다. 그래서 네 팔인 노동자의 경우 실제 월 임금은 15만9천2백원이다. 중국에서 온 연수생의 경우, 각 나라 중에서 가장 높은 260달러(30만8천원)를 받지만 한국에 오기전에 적을 두고 있었던 중국의 직장에서 매월 120(9만6천원)달러를 떼어가기 때문에 실제 한달 임금은 140달러(11만 2천원)이다. 중국의 경우 사회주의 체제여서 주택, 의료, 자녀교육 등을 국 가에서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직장을 통해서 보장되기 때문에 직장을 잃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 6개월 이상 무단으로 직장에 안나가면 해고가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조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나. 외국인취업연수생이 한국에 오기까지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쯤?

네팔인의 경우 한국에 오기 위해 인력업체에 내는 돈이 최소 1300(104만원)달러-3000(240만원)달러 까지 이다. 여기에다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까지 계산하면 가장 적게 내고 온 사람도 최소 1800(144만원)달러 정도이다. 중국교포의 경우 인력업체에 내는 돈이 최소 1620(130만원)달러- 6000(500백만원)달러를 지출한 경우 까지도 있다. 따라서 이들이 한국에서 받는 월 임금으로 수입을 따져보면, 이들은 취업연수생으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1년동안, 한국 입국경비 조차도 깊을 길이 없게 되는 셈이다.

다. 속임수 모집과 계약

네팔인들의 경우 현지 모집내용은 월급여 450-500불, 기술습득 가능, 숙식제공, 일 8시간(주44시간) 노동, 생필품, 의료서비스 회사 무료제공, 합법취업비자 입국가능 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입국 후 월 급여 210불, 노동시간은 일일 8-12시간, 생필품 미제공, 회사 밖 외출금지, 임금은 매월 인력회사가 공 장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80%는 본국으로 송금 20%는 출국 때 까지 보증금으로 보관하겠다고 일방 통고, 매 월급에서 11불씩 인력관리비로 공제. 1-2일간 작업장에서 한국말로 오리엔테이션만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본국에서 모집당할 때 백지에다 싸인을 하게 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송출수수료를 다 내고 난 다음 한국으로 출발하기 하루전 또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마자 인력회사(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지정한)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사실을 알게 된다. 지난 94년 6월 9일 최초로 입국했던 네팔인 노동자들의 경우 김포공항에서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많은 이들이 울기 까지 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들은 인력회사의 속임수에 속아서 입국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라. 인력관리 회사와 정부의 조직적인 통제-여권, 임금압류와 감시, 감금, 체포의 공조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인력회사와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는 이런것을 예상을 했다는 듯이 여권을 압류하고, 무전기가 달린 차까지 구입해서 24시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단속도 하고 겁을 주는 형태로 이들을 통제하고 있다. 밤12시에도 기습적으로 기숙사에 가서 인원점검도 하고, 말 안들으면 수갑을 채워 인력회사 사무실로 데려가 신나게 두들겨 패기도 한다. 어떤 회사에서는 공장정문

쪽으로도 못가게 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정된 회사에서 탈출을 한 사람들은, 이 제도가 시작된지 불과 몇 개월도 안되었지만 몇천명에 이르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정부가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는 형편이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의 상황에 보다 익숙해 갈 수록 이탈은 보다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사례) 네팔인 수닐 카르키(Sunil karki,25세), 산트 바하두르(Sant bahadur,31세)씨 경우 < 94.10.7일 인터뷰>

이들은 고국의 신문에서 “한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니 사무실로 전화를 주십시오. 사무실 전화번호 22762, 사무원 강가구릉, 월수입 450불 이상 보장, 회사에서 의료서비스, 생필품, 숙식 무료제공”이라는 기사를 보고 인력회사와 접촉을 했다. 그리고 94년 8월 18일 위의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2500불을 항공권료, 비자발급료 등 한국에 오는 총 경비라며 지불했다. 계약서 같은 것은 한 장도 주지 않았다. 94년 8월 22일 18명의 동료와 함께 1년계약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였다. 당시 한국인 2명이 마중을 나와서 목포에 있는 ‘00’ 회사로 데려다 주었다. 도착 다음날은 ‘00’ 회사가 가지고 있는 3개의 공장을 들면서 한국 사람이 손짓 발짓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하였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8월 24일부터 일을 시작 했다. 이 회사는 한국인 종업원 250명 규모이고, 이곳에서 네팔에서 온 18명의 친구가 모두 함께 일하게 되었다. 하루에 8시간 일을 했고, 일은 컵이나 그릇 만드는 일 이었다. 식사는 공장 식당에서 먹고, 잠은 회사 안의 큰 방 2개에서 한 방당 7명씩 잠을 잤다. 일을 시작한지 2주쯤 후에 회사가 만든 일방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을 하라고 했다. 계약서에는 월급이 300불이라고 되어 있었다. 월급이 450불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300불이냐고 했더니, 이것이 한국의 법칙이라고 했다. 그런데 첫 월급날이 되어서는 월급이 다시 깎여서 210불인 것을 알게 되었다. 9월 24일이 되어서는 최초로 임금수당으로 9만원 만을 받았다.

8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경 회사의 한국인 반장이 일을 하라고 하였다. 이때 18명의 네팔인들은 일요일이니까, 일을 할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반장은 산트의 멱살을 잡고 기계 앞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계속해서 산트가 거부를 하자 주먹을 쥐고 얼굴을 3차례를 때렸다. 당시 오므릿 구릉이라는 다른 동료는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울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날은 결국 일하지 않았고, 2시간 후에 반장은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공장에서 생활할 때, 공장 정문으로도 못가게 하고, 편지 부치려 우체국에도 못가게 했다. 서울이나 네팔로의 전화도 차단 시켰다. 편지를 부처달라고 줘도 부쳐 주지도 않았다. “네팔에 있을때는 한국사람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2-3일이 되니까 돌아가고 싶고 너무 너무 슬펐다”. “같은 사람이라면서도 우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를 않는다”.

이들은 결국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하였다. 이들이 탈출 하였을 당시 회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도 못되어 목포시를 에워싸고 이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회사와 경찰은 지금도 전단을 뿐이며 이들을 쫓고 있다. 현재 이들은 서울근교의 한 공장에 취직을 하여 무사히 일을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회사는 현재 회사에 남아 있는 16명의 동료들에게 1년 체류기간이 끝나면, 재연장 1년의 기회를 박탈하겠다며 위협하면서, 2명이 돌아오라는 무언의 압력을 계속 넣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언론을 동원하여 이들을 ‘도망자’로 부르게 하고, 또 이들이 무순죄를 그리 많이 짓는다고 ‘외국인 범죄 증가’라는 선전을 해대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94년 말에는 외국인 연수생 1명 체포당 만원씩을 포상금으로 내걸기도 하였다. 또 연수생을 쓰는 기업주들에게는 공장에서 외국인 연수생이 한명이라도 도망가면 다음부터는 연수생 책정을

안하겠다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연수생의 법적인 주인인 '인력회사'라는 곳에도 다시는 외국인 연수생을 데려올 권한을 박탈할 테니 단속을 잘하라며 계속해서 관리란 명목의 감금을 독촉해 왔다.

물론 이번 명동성당 농성을 계기로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근본문제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지정회사 이탈자에 대한 체포강화와 포상금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어 감금노동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사람 파는 장사로 수입 올리는 정부가 지정한 인력송출업체

취업연수생 도입을 정부로 부터 위탁 받은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이들 2만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쟁계 50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아울러 이들을 채용한 회사가 예치한 75억원의 돈으로 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외국인 취업연수노동자 한 사람이 더 들어 올수록 이윤은 갈수록 불어날 것이다.

바. 이들의 임금 수령은 누가?

매월 이들의 임금 중 20%는 지정된 회사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에 갈 때 까지 인력회사가 보증금으로 압류하고, 80%는 집에 송금해 준다는 명목으로 역시 강제로 압수해 가버린다. 이 때문에 이들은 매월 자신들에게 정식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한푼도 손에 직접 쥐어 볼 수가 없다. 다만 정식월급외에 임금수당만을 받아서 그 것으로 생활비로 쓰는 형편이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어떤 곳은 임금이 없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임금이 너무 많아서 하루 15시간씩 일을 해야 하기도 한다.

그런데 네팔노동자들의 경우 전화로 확인해 보아도 6개월이 지난 94년 말까지도 본국에는 돈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인력회사는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해서 그동안 이자 놀이를 하고 있다. 이번 농성자들의 경우 문제가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이들이 농성을 하기 위해 회사를 이탈한 후인 94년 12월 30일에야 2개월분의 임금이 네팔에 있는 작은아버지에게 전달이 되었고, 송금영수증도 본인들의 송금구좌도 없는 영수증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들의 임금을 받아간 인력관리회사 대표의 개인구좌에 2억원 이상의 돈이 임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경우 예전에 이같은 인력회사들이 돈을 전부 가지고 날라버린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이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이런 조건들 조차도 한국에 와서야 알았다고 한다.

사. 작업증 질병과 산재사고에 대한 보상

이들을 노동자 인정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도 임금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고 연수비라고 불리고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산재의 경우도 이들은 '연수생'이기 때문에 산재보상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대신 편법적으로 기업주가 개별적으로 상해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이 보험에 따르면 치료는 2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고 보상은 최고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이루어 졌었다. 하지만 이번 농성을 계기로 치료비는 3000만원 한도내로 상향조정했고, 보상금은 1420만원 선으로 오히려 낮춰졌다. 이는 치료비를 감당해야 할 기업주의 부담은 덜어주되 정작 산재를 당한 후 보상금으로 생활해야 할 이들의 보상금을 오히려 짹아버린 개악인 셈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94년 2월7일부터 산재보상을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에게 지불하는 산재보험료가 아까워서 불법체류형태의 외국인은 추방하고, 취

업연수생들은 들여와 외국인 산재보험 적용을 유명무실화 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아닌가 판단된다.

2. 문 제 점

- 1) 모집과정에서의 과대선전과 송출과정에서의 과다 수수료 징수
- 2) 적응교육의 전무(언어, 문화, 공장생활, 작업내용 등)
- 3) 회사밖으로 자유로운 외출을 금하는 감금생활
- 4) 임업시간에 대한 선택권 박탈로 인한 장시간 노동
- 5) 임금과 여권에 대한 압류
- 6) 산업재해 보상법으로 부터의 배제

7) 사용자 단체가 노동력을 관리하는 모순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무사하리라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용자에게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임금액수와 지급방법, 생활 등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써 상식을 무시한 처사이다. 노동자를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하도록 되어야 한다. 아니면 최소한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8) 감금, 임시생활의 원인이 되는 지난친 저임금

과다한 입국 수수료를 내고 온것과, 한국에서의 생활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친 저임금은 이들의 지정회사 이탈을 구조적으로 강제하고 있는셈이다. 따라서 이들을 회사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들의 신체이동의 자유권을 박탈하기 위한 신체감금, 여권, 임금 압류 등이 가해지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

9) 실상은 노동자 하지만 이름은 연수생 따라서 노동법으로 부터의 보호박탈

사실은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열악한 제조업체에서 몸으로 떼우는 일을 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이들의 생활이다. 그에 놓고도 연수생이라는 신분이라며, 노동자로서 아무런 기본권리(생활의 자유권, 임금직접수령권, 규정시간외 노동시간선택권, 개인신분증 자기소유권, 강제감금노동으로 부터의 보호권 등)조차도 보상하지 않고, 장시간 저임금노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용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긴급하다.

사례) 베트남인 호안씨 사례

이름: Nguyen Trong Hoan 나이: 22세 국적: 베트남 한국입국일: 1994. 8.18

주소: Thanh Xuan-Dong-da hanoi in VIETNAM

입국비자: 1년 기술연수 비자

여권소지: 한국 공장 사장이 보관중

입국경비: 미화700불 (항공권료는 사장이 지불함)

일한장소: 회사 이름은 잘모르고 94.8.20일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공장은 부천에 있다

작업시간: 아침9시 - 저녁 7시(주), 저녁7시 - 아침8시(야) 일주간격으로 교대

일의종류: 프라스틱제품제조(샴푸병만들)

공장규모: 한국인 20명, 베트남 2명

공장주소: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내동 131-2 공장이름은 모름

공장에서 나온날: 94년12월5일경

속식: 회사가 지정해준 식당에서 식사했고, 짬은 회사내의 기숙사였는데 그곳은 햇빛이 들지 않는 지하였다. 천장높이가 80센티밖에 되지 않아서 일어설 수 조차 없었다. 나는 그 방이 감옥과 같다고 생각한다. 다른 베트남 친구와 들어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리고 바로 윗층 칸타이에서는 한국인노동자들이 살았다.

월급: 미화230불(18만4천원) + 임업수당은 시간당 미화1.5불씩 받고 매일 3시간씩 26일 분(9만 3천 6백원) = 277,600원

공장생활은? 2달전에 한국인노동자가 술을 먹고 발과 주먹으로 때렸고, 뺨도 얹어 맞았다. 그리고 공장의 메니저가 “야 새끼야” “씹 할놈아” 등의 욕을 하였다. 한국에 온지 이제 4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이 말을 거의 정확하게 말할 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은 “갓 냠”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메니저가 자신에게 자주 했다며 무슨 뜻인지를 물어왔다.

왜 공장에서 나왔습니까? 공장방에서는 잠을 자거나 쉴 수가 없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윗층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발로 바닥을 고의적으로 울린다. 그리고 술을 먹고 담배연기를 자욱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회사생활을 더이상 할 수 없었다.

가족상황은?: 친여섯살인 아버지와 친세살인 엄마가 있다. 그리고 스물일곱과 스물네 살인 형이 하노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 또 열아홉살인 남동생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가족은 이렇게 여섯명이다. 아버지가 3년전 까지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을 다루는 엔지니어로 일을 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은 베트남에서 중간층에 속한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얻어야 하는데 어렵다.

참고: 영어도 서툴고, 한국어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사례) 네팔인 농성노동자 13인과 네팔대사와의 2차회담 내용

(95.1.15일 밤10시-45분까지 장소: 명동성당 사제관 식당)

네팔인 노동자 다네소르 반자데씨와 외국인노동자 피난처

소장 김재오씨가 함께 녹음테이프 원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나마스테”라며 서로 인사를 하다.

대사: 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가지 문제에 대해 한국정부에 이야기 했는데,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내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할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국정부에서 온 한 사람이 함께 공식발표를 합니다. 내일 농성이 끝나는 대로 2-3일 안에 다른 곳에서 좋은 노동조건이 있는 회사에다 일자리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사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다른 네팔인들이 일하는 곳에 소개해 주겠습니다.

농성자: 그때 공식문서를 줍니까?

대사: 예 줍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정부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계약마다 42시간에 210불 받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임업수당으로 받게 되는거 맞습니까?

농성자: 글쎄요, 우리를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210불 받고 일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기술조차도 못 배웠습니다.

대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전과 임금은 내일 주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접받고 6개월 월급도 다 주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 계약에는 210불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기자들 앞에서 확실하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42시간에 210달라 라고 계약이 있었다.

농성자: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서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사: 그래요. 새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있는 계약을 개선하여 만든 것이다.

농성자: 그러면 한국 노동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대사: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다. 노동법이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수는 없다. 노동법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한국사람들로 추정)도 다 잘 알수 없어요. 노동법 안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들(한국사람들)도 잘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 했다.

농성자: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서 한국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받고 그 밖에 다른 이익을 보장받고 있는데, 그런것도 노동법안에 보장되어 있습니까?

대사: 이것보세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외국인들이 일본노동자들과 똑같이 임금을 못 받아요.

농성자: 저희들이 취업연수생 비자로 데리고 왔는데, 왜 다른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대사: 이들의 이야기는 연수(트레이닝)하고 일 같이 할 수는 없다. 이런 일이라도 당신들이 연수(트레이닝)라고 동의해야 해요

농성자: 그러면, 이런 연수가 어디 있습니까? 백기로 짜리 포대를 날로면 기술을 배울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도 연수(트레이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대사: 그러면 여러분의 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농성자: 지금 여기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같은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이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도 받는데, 저희들이 17만원 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돈에서 우리생활도 어려워요. 이 연수는 이름만 연수입니다. 여기 한국인들이 저희들을 거짓말 시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대사: 여러분들이 카트만두에서 그런 계약을 했습니까? 있으면 보여 주세요. 그리고 이 계약에 대해 여러분이 만족합니까?

농성자: 이 계약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저희들의 사인이 없습니다.

대사: 그 계약에다 무어라고 썼습니까?

농성자: 그 계약에는 누구와 싸우면 안되고, 술먹고 시비걸거나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고, 한국 법 따라 가야된다라고만 써 있습니다.

대사: 이 계약에서 돈에 대해서도 쓰여 있습니까?

농성자: 예 있습니다. 210달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 8시간 한달 월급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국오는 돈을 다 낸 후 한국으로 출발하기 바로 전에야 알았습니다. 이 연수에 대해서 연수시키지 않고 다른 노동자처럼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연수비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사: 그 연수비자는 제목에 기술연수라고 써 있습니까?

농성자: 연수비자라고 하면서 210달러라도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한데, 그러나 여기서는 저희들이 노동자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계약을 할때 다른 외국인노동자 만큼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 그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1달러에 한국돈으로 얼마입니까?

농성자: 1불에 8백원 입니다. 저희들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다른 노동자 만큼 월급을 받아야 합니다.

대사: 처음에 왜 이런 이야기를 확실하게 안했어요.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없다. 지금 여러분들을 job training에서 210불 받아도 괜찮다. 당신들이 210달라에서 일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들의 컴플레인 아닙니까?

농성자: 실제로 연수는 그냥 이름이고, 지금 우리는 여기 노동자처럼 존재했다.

대사: 기다리세요. 당신들이 올때 한 계약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에다 여러분들이 이미 사인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연수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어떤 조건으로 데리고 오고, 다른 노동자처럼 일 시키고 210달러가 너무 적은 월급이라고 컴플레인 있는거 나도 안다. 당신들이 트레이닝 비자로 받고 싶으면 괜찮아요. 210달라 받고 2-3년 후에 돌아가세요.

농성자: 지금 까지 7-8개월 했는데, 이런 손해에 대해 누가 책임져요. 이 문제 우리문제만 아니고 다른 많은 연수생친구들의 문제입니다.

대사: 이제 새로 계약 해야 합니다. 전에 한 계약을 변경하자고 하면 그들이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권이 없다고 다른 사건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이미 이야기 했어요. 이런 이야기 확실하게 됩니다. 전에 한 계약을 잘 모른다. 이제 다시 그들에게 계약에 대해 이야기 할 거요.

농성자: 연수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크게 생길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2만명 트레이닝 비자 연수생들을 다 새로 계약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사: 다른 외국인연수생들은 어때요

농성자: 똑같애요. 그렇게 잘 되지 못했어요. 많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친구들이 회사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대사: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어떤 도망이라고 생각해요

농성자: 한공장에서 다른공장으로 바꾸는 것을 여기 한국에서는 도망자라고 불리요. 그래서 저희들을 트레이닝 비자로 데리고 와서 이런 일 시키지 말고 다른 노동자처럼 권리를 주세요.

대사: 연수에 대해서 교육받은 적이 있나요.

농성자: 기술연수라고 말만 했었어요. 이것을 아무리 소리 질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되면 저희들을 다른 노동자 만큼 권리를 주고, 노동자로 만들어 주세요.

대사: 여섯달 월급 어떻게 주면 좋겠어요.

농성자: 매달 210달라도 계산하고 주십시오.

대사: 이제 다른 계약하면 다른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새 규칙이 나올 것입니다.

농성자: 당신이 우리 대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사님을 믿고 있는데, 대사님도 저희들을 잘 생각해 주세요. 나중에 누구라도 문제 안생기게 해주세요.

대사: 이 내용에서 나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농성자: 저희들이 13명 문제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사람 문제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가 억지로 보낼려고 한다면, 우리도 체포되어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대사: 아까 제가 3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말했다고 해서 저도 지금 마음이 확실하지가 않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한국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서로 계약을 맺어서 끝내도록 합시다.

농성자: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대사: 다른 사람도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나도 다른 한국사람 한테 모든 이야기 하지 않고 있다. 언론과 한국인들이 당신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중에 와서 정치적인 선으로 갔습니다. 법무부에서 사과를 하는 것 보다 언론과 텔레비전도 반대편으로 일을 하고 있다.

농성자: 이것은 특별히 정부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대사: 당신들을 데리고 올때 정부도 함께 관여 했나요.

농성자: 정부가 안하면 어떻게 한사람이 2만명이 들어올 수 있나요.

대사: 정부도 같이 할 수 있지만, 사설업자들도 그런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동의서를 만들때 노동부 장관도 같이 있으면서, 이 연수계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테도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을것이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농성자: 계약서와 그 내용은 언제 저희에게 보여 주겠습니까?

대사: 그것을 내일 당장 줄수는 없고 단체와 많은 토론해 보아야 하고, 먼저 계약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 계약을 언론이 다 모여서 공식발표를 한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발표를 하면서도 계약에 따라 안해주면 언론들도 정부의 잘못이라고 그때 쓸것이다.

농성자: 이제 다른 노동자 처럼 일하면은 그만큼 권리도 받아야 되고, 한국 노동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되고, 월급과 다른 권리들도 다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대사: 나중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개선시키면서 가야 됩니다. 계약서 안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연수비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데리고 왔어요. 왜 어떤 일 시켰어요. 그래서 계약에 따라서 210달러 받고 계속 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기간연장도 해줄 것이다.

농성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똑같은 일을 시키면서 그것도 트레이닝으로 부를 생각이란 말입니까?

대사: 그래요. 어떤 이야기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다른 노동자 처럼 일 시키면 그만큼은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해결이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서로 “나마스테”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부 록

농성관련 자료

명동성당 농성참가 외국인 노동자 명단 및 인적사항

(이름, 본 주소와 국적, 한국입국일, 인력회사에 지불한 금액, 정식월급, 회사이름 순으로 기록)

1. Binod prasad Acharya. hansposa-1 sunsari kosi Nepal. 94.7.25.
1,300불. 210불. 삼영(주)
2. Hom Prasad Luitel(31세). hansposa-1 sunsari Nepal. 이하 동일
3. Ganesh Pandey(26세). karaiha-2 rupandehi lumbini Nepal. "
4. Ramesh Parsasi(22세). anarmani-7 ihapa mechii Nepal. "
5. Bel Bahadur Thapa(34세). rupandehi lumbini Nepal. "
6. Jangn Bahadur Thapa(35세). syanja kyakmi-3 gandaki Nepal. "
(양 미간 사이 코뼈 부러짐. 눈 주위 타박)
7. Jeevan Bujagay(22세). indrapur-7 morang Nepal. "
(가슴과 척추를 맞고 입에서 피가 나옴)
8. Binod Adhikari(20세) itahari-2 sunsari kosi. "
(입안이 찢어지고 안면 타박상)
9. Navaraj Phuyal(26세) "
(코피, 아랫입술 터짐, 원쪽 머리가 부음)
10. 북 다지엠(26세). 네팔. 94.6.9. 1,300불. 210불
11. 모두바자가이(20세). 네팔. 94.6.9. "
12. 어닐다칼(22세). 네팔. 94.6.9. "
13. 자야소로 파우델(28). 네팔. 94.6.9. "

호소문 1

한국인과 한국정부에 드리는 13인 외국인노동자 호소문

- 이 호소문은 네팔인 다네소르 반자데씨가 원문에 가깝게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고국에 일자리가 없고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기술연수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우리들 가슴에 좋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팔에서는 기술 연수생으로 한국에 가면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처럼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은 적은 없었습니다.

네팔에서는 한국에 가면 한달 임금을 최소한 400~500불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 와서 월급을 210불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210불 조차도 우리들이 직접 손에 받지 못합니다.

우리들은 우리를 책임지고 있는 동양인력개발(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지정한 공식 인력 송출업체)에 가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팔에서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월급을 직접 우리에게 주고 계약과 다르게 오랫동안 일을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수갑을 채워 끌고 가 구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동양인력주식회사에 가서 제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곳에서는 도저히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고 많은 노동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인권과 우리들이 지금까지 노동해서 빼앗긴 돈을 찾아달라고 한국인과 한국정부에 호소합니다.

저희들의 월급은 인력회사가 고향으로 부쳐주겠다며 암류해 가기 시작한지가 6개월이 지났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은 한푼의 돈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공장에서도 매일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하고 월급도 직접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 달라고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로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이런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피난처와 한국의 민주노총 준비위의 조언을 구해서 이 행동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를 물품을 생산해 내는 기계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런 상황을 한국정부가 조직적으로 돋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들은 더 큰 두려움과 압박감을 느끼며 이 모순에서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만일 한국정부가 지정해준 공장에서 이탈을 하면 경찰들과 인력회사가 뒤를 쫓고 한국사회가 우리들을 도망자로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들은 정말, 다시 우리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공장에서 계속 일할 수도 없어서 숨쉴 수 조차도 없이 그동안을 살아 왔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외국까지 와서 데모할 생각은 실제로 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더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늘부터 무기한 호소

농성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저희들을 기술연수생 비자로 데리고 왔으면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술을 안 가르쳐 주고 하루에 12-13시간을 일을 시키려면 그만큼 모든 댓가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일방적으로 저희들의 월급을 빼앗아간 동양인력개발은 우리들의 손에 직접 그동안의 월급을 돌려 주어야 합니다.

넷째, 인력회사에 가서 월급을 직접 달라, 계약에 따른 보장을 하라, 공장에서 폭행이 없어야 한다고 부탁했는데도 저희들을 오히려 수갑을 채우고 욕설과 폭행을 하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사람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유롭기를 원하므로 우리들의 여권을 빼앗아 가서는 안되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을 하는데 이런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여섯째, 거짓된 약속으로 속여서 우리를 데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비록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그래서 한국에서 노예처럼 당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인간존재 그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우리와 같은 일을 겪었지요. 그 때를 기억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또 지금은 한국이 세계화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 와서 저희들이 흘리는 땀값 만이라도 달라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학대하면 세계화와 한국의 이미지는 국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과 한국정부에게 제발 저희들을 동물처럼 만들지 말라고, 같은 사람과 형제로 대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1995. 1. 9

한국땅에 팔려온 네팔인 취업연수생 13인 일동

우리는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1월 9일부터 산업기술연수생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취업연수생들입니다. 저희가 강제송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곳 추운 농성장에서 힘겨운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취업연수생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리고 이 취업연수제도에 의해 희생되어 온 저희와 동료 연수생들의 처우 개선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저희의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언론 등과 관계기관에서 저희들의 농성 목적이 변질되었다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끼며 다음과 같이 그간의 경위와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히는 바입니다.

1. 우리는 너무나도 부당한 제도와 현실에 희생되었습니다.

저희는 돈을 벌어 가난을 이기고자 한국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이 제도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국에서 약속된 월500불의 약속이 사라지고 월 210불~260불의 저임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가 배치된 업체에서는 여권압수와 폭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적은 월급마저 직접 받아본 일이 없고 일하다 다치면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채 절망을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목도하고 체험한 저희 연수생들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당함을 호소하여 보았지만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한국정부의 신속한 조치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저희 문제가 언론에 의해 크게 보도되자 한국정부는 일련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셔서 우리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습길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신속한 조치에 의해 저희 농성자의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저희는 우리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전체 연수생의 문제가 풀리길 원합니다.

한국정부가 이같이 신속한 일련의 조치를 취해주고 또 직접 방문하셔서 여러 긍정적 제안을 내놓으시고 또 우리를 고용한 회사의 사장님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실 때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저희 각 사람에게는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농성을 해제하지 않고 지금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한국 국민들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또 이를 놓고 일부 언론은 우리의 농성이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이같은 보도는 저희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쓴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리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연수생이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고 이들 저희 동료들의 문제가 함께 풀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시한 안은 문제의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난 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제시한 안을 보았습니다. 저희는 우선 그동안 저희 연수생에 관한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책임져 왔던 기관이 자신들의 잘못은 하나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내놓은 안은 비록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면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현재의 연수제도를 온존시키고 저임금 제도와 재해보상체계를 유지시키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5. 우리는 한국정부가 취업연수제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정부는 지난 며칠동안 취업연수생의 근로자 자격부여, 산재보험 적용, 의료보험 적용, 취업연수제도 개혁 같은 대단히 긍정적인 대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구체적으로 확실히 밝혀져야 합니다. 저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짝 대안을 내놓고 후에 흐지부지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6. 저희 요구사항은 단순합니다. 취업연수생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시고 부당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나라 대사님과도 몇 번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못했음을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의 요구사항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첫째, 현재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 다시는 저희와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한국정부가 구체적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저희도 근로자로 인정해 주셔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당장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약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UN의 이민노동자 보호협약과 ILO 규정, 그리고 한국의 근로기준법까지 내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요구한 두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만 이루어진다면 농성을 해제하고 산업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 문제로 많은 한국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풀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임금을 제손에 직접주세요. 제발 떼리지 마세요. 자유롭게 공장밖으로 나다니고 싶어요.” “우리들은 가난한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들의 존재 자체는 가난하지 않습니다”고 하는 이들의 절규는 해방50돌이 되는 새해벽두부터 이 민족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들여다 보게 합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기에 안으로 감추자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국사람 모두가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자조섞인 말을 하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이 문제를 접하면서 감추기보다는 진지하고 준엄한 반성을 통해 우선 우리 모두가 거듭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국가경쟁력이란 미명하에 노예노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습니다. 산업기술연수제도가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인권유린 등 심각한 문제점들이 수없이 야기되었지만 노동부, 법무부, 상공부 등 관계기관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들은 피와 가슴을 가진 인간을 쓰면서도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정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기를 회피하는데 급급했을 따름입니다. 이러한 근시안적 행태로 인해 한국국민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노예노동의 공범이 되어 버렸으며,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우리는 정부와 경제단체가 그동안의 잘못을 외국인노동자 당사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들이 이땅에서 노동하는 한 노동자가 아닌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 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정부와 기업측에 다음사항을 요구합니다.

- 정부는 농성중인 13인에게서 압수해간 여권과 임금을 당장 지급하고 적절한 사과를 해야 합니다.
- 정부는 3만여명에 이르는 산업기술연수생 모두에게도 그동안 적립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여권을 당장 지급조치 해야 합니다.
- 정부는 모든 산업기술연수생들에 대해 노동자 자격을 인정하는 전면적인 재계약을 실시해야 합니다. (임금직접지급, 인력회사관리제 철폐 노동부 근로감독, 적응재교육-언어 등-실시, 국내노동자와 동등한 수준 임금보장, 산재·의료보험 적용, 여권본인소지, 신체이동의 자유권 보장,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 자격인정)
-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인력공급이란 이름으로 사실상의 인신매매 행위를 한 증기협연수협력단장과 동양인력개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농성참가 외국인들에 대한 차후 신변보장과 적절한 재취업을 보장해야 합니다.
- 정부는 온갖 비리의 온상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즉각 철폐해야 합니다.
-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를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합의를 거쳐야 하며, 내국인노동자와 동등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1995년 1월 12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민주노총(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경제정의실천 불교시민연합, 성남 외국인 노동자의 집, 구리노동상담소, 중국노동자센타, 전국연합인권위, 한국노총, 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 YMCA, 경실련, 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 노동정책연구소, 향린교회, 한국민주노동자연합, 국민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인권회관, 영등포 산업선교회, 다일공동체, 전국노련, 민중정치연합, 민예총, 진보정당추진위, 천주교 수원교구 외국인노동자상담소연합,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희년선교회, 전국승가대학학인연합, 영주군농민회, 참여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조국평화통일불교인협의회,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경실련 기독청년협의회,

보도 자료

발신 : 명동성당 네팔인 13인 노동자 일동

수신 : 각 언론사 및 관련 정부 단체

내용 : 농성 외국인노동자의 요구내용 설명

연락처 011-277-8589(휴대폰), 015-274-8186(삐삐)

(농성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한국노동법에 따른 노동자 자격 인정’의 의미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 사항)

1.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 자격 인정’의 구체적인 의미

- 1) 실질적으로 노동을 하면서도 연수라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철폐
- 2) 한국 노동법상의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재계약 체결
- 3) 사용자 단체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의 인력관리 금지와 노동부에 의한 인력관리를 의미합니다.

저희는 현행 산업기술연수제도 하에서는 노예노동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음을 확신합니다. 이에 ‘노예노동제도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근본적인 철폐와 한국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하는 재계약체결’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정부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사회가 노예제도에 대한 양심과 도덕성의 잣대를 세우는 문제로써,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출 해야 할 사회적, 문화적, 도덕적 비용까지를 비롯 국제적인 부담까지도 고려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정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오히려 그 반대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성자 13명에 대해서만 임금, 여권 지급, 타업체에 재연수시킨다는 것일 뿐, 전체 연수생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2) 또한 노예노동의 발단이 된 연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연수장소 무단이탈 연수생 검거를 위한 포상제 실시’ 등과 같은 이탈자 방지대책만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오히려 더욱 더 노예노동을 부추기는 제도일 뿐입니다.
- 3) 연수수당의 상향조정 등 부분적인 개선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실제로는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기본적 인권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그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하시라도 후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4)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유지하면서 노동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인력을 관리하게 하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하려고 있습니다.

5) 개인 상해보험을 2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애 보상금을 1천 5백만원에서 1천 4백만원으로 줄인 것은 실질적으로는 기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보상 혜택을 줄이는 것입니다.

6) 연수자에 대한 교육일수를 1일에서 5일 이내로 조정하겠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거의 담아낼 수 없다는 점에서 아무런 변화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구체적인 요구사항

한국노동법에 따른 노동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것은, 그렇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청들이 법적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가. 임금과 관련해서

1)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미만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감독 처벌이 제도화 되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이루고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40만 7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93년도 한국인 제조업체의 노동자 월평균임금인 87만원정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선 이상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게 될 때,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현재의 불법체류자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며 그것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생활과 이에 따른 숙련노동을 가능케 하여 한국의 경제적 필요에도 잘 부응하게 됩니다. 한국인 노동법에 따른 노동자 자격이 인정된다해도, 임금수준이 반드시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인권시비를 잠재울 수 있게 됩니다.

나. 산재재해와 관련해서

1) 노동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개인 상해보험을 운영할 경우 기업주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보험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개인상해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산재 보상보험법을 적용하고 있음

을 고려할 때 산업연수생에게도 당연히 산재적용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

1) 법에 규정된 1일 8시간 이외의 임업, 특근, 야근 등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라. 신체이동의 자유와 관련해서

1) 압류된 여권을 돌려주고, 임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정부는 13명의 여권 반환과 임금 직접지불에 대한 기자회견만 했을 뿐, 전체 연수생에 대해서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신력있는 방법으로 확약하지 않았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수준인 것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개인통장으로의 입금'은 명백히 반대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첫째, 언어, 둘째, 시간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통장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개인통장을 기업 또는 관리업체에서 보관하는 경우 또 다른 죽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고 해서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여권도 '강제보관 억제' 정도로 악용 소지를 남겨둘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연수생 본인이 갖고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3. 정부의 약속방법에 대한 제안

저희는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속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가. 우선, 정부관계부처의 공식적인 발표와 함께 공식문서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구체적인 실시 일정을 다음과 같이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1) 3만명 연수생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여권 : 즉시 지급

2) 전면적인 재계약 실시 :

- 13인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 다른 전체 연수생에 대해서는 발표 후 3일 후부터 한달이내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신: 보도협조의회

**<1월 14일(토)오후 명동성당 농성 취업연수생
공대위에서 정부당국에 교섭제의
-- 농성해결 실마리 잡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네필인 취업연수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YMCA, 경실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NCC,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준) 등 30여개 시민, 종교,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약칭: 연수생공대위, 공동대표: 김승훈신부외 14명)에서 1월 14일(토) 오후 6시경 정부당국에 취업연수생의 명동성당 농성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교섭을 공식 제의했다.

연수생 공대위측은 노동부 이홍지 직업안정국장을 통해 관계당국인 통상산업부, 노동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실무책임자와 공대위대표 및 농성외국인 연수생 대표간에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 상호간의 허심탄회한 대화와 교섭을 통해 농성중인 취업연수생들의 인권 현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노동부 이국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락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교섭이 진행되면 지난 1월 9일(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은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연수생공대위는 1월 14일 오후 1시 및 3시에 잇달아 실행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열어 명동성당 농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당장 해결할 수 있는 현안과 해결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분리해서 교섭해나가기로 결정하고, 이 원칙하에서 조건없이 정부당국에 실질교섭을 제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이날의 교섭제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연수생공대위측은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인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1월 16일(월) 오전 10:00 기자회견을 통해 외국인 취업연수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아울러 공대위측의 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보장문제에 관한 입장을 천명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수생 공대위측은 한국국민들을 대신하여 네필정부와 국민 및 연수생 가족들에게 잘못된 취업연수제도로 인해 많은 네필인들이 한국내에서 인권침해를 받은데 대해 공식사과문을 발송하기로 결정하였다.

1994. 1. 14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연락처 : 011- 277- 8598

해명서

네팔인 연수자 명동농성사건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대하여 외국인 연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앙회 회장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이 네팔인 연수자 명동농성사건이 마치 외국인연수자 전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연수자의 부당한 처우 등은 대부분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이 아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기업이나 국내 알선업체의 불합리한 관행에 의한 것이며 대부분의 외국인연수자는 배정된 연수업체에서 배우며 일하고 소득을 높여 잘살아 보겠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연수에 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 연수자를 송출하지 않고 있는 동남아 여러나라에서도 서로 많은 연수자를 한국에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 많이 걱정해 주시고 사태해결에 협력하여 주신 정부당국과 특히 명동성당측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무런 경험없이 시작한 외국인연수업무도 1년 남짓 운영하다보니 그간 많은 노하우가 축적되었으며, 제도나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대부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점, 특히 연수자에 대한 인격적 대우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임금체불을 비롯 일부 송출기관의 과다수수료 징구등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Agreement between the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KFSB) and Nepalese Trainees

한편 장기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제도적인 문제에 관하여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기간내에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본 제도의 개선안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를 비롯 언론계와 시민, 종교, 노동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네팔인 연수자의 명동농성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5. 1. 1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朴尙奎

32

Whereas the undersigned have agreed that it will not be in their interest for the present unhappy situation to be allowed to continue, and in order to make the technical project more beneficial for all the Nepalese trainees(not only the 13 Nepalese trainees on strike),

and their stay in the Republic of Korea much more pleasant, they have come to the following agreement under the Standard Contract as well as its related regulations after heart-to-heart talks to the satisfaction of both sides :

1. The KFSB immediately pay to the Nepalese trainees the full amount of their allowances which, they claim, have not been paid. However, the Nepalese trainees shall return to the KFSB the portion of the amount, if it is confirmed on checking to have already been paid.
2. The Nepalese trainees shall receive their allowances in time directly from their employers.
3. The passports which have been kept by the Korean employers shall be immediately returned to the Nepalese trainees, and shall be kept by them. The KFSB shall ask Korean authority to give the Nepalese trainees favourable consideration that they can stay legally in Korea.
4. The KFSB shall make sure that the Nepalese trainees be assigned to new companies after consulting with authorities concerned and shall agree on a basic monthly allowance for regular 44 hours work per week and for extra hours of work and the commensurate allowances to be paid for extra work under the standard contract.
5. The KFSB shall make sure that the Nepalese trainees shall not be forced to work against their will after regular work under the contract without mutual consent, and that working and living conditions will be free of hostilities and violences against the Nepalese trainees, and that freedom after work will be ensured.
6. In case of sickness and accidents while at work, the Nepalese trainees shall receive the benefit of medical treatment and due compensation in case of dismemberment or death.
7. The KFSB shall make sure the above terms are observed in a spirit for which they are intended. The Nepalese trainees, on their parts, shall end the strike and leave the strike site immediately after this agreement is signed.
8.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immediately after the signing.

Signed on January 17, 1995

Signed by Sang-kyu Park

Signed by Nepalese trainees

President

Korea Federation of Small Business

22

중소기업 중앙회와 네팔인 산업연수생간의 합의문

아래의 서명자 쌍방은 현재의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두는일은 서로의 이해에 맞지 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며, 또한 산업기술연수 정책이 모든 네팔인 산업연수생들(농성에 참가한 13명의 연수생들 뿐아니라)에게 좀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리고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의 한국 체류여건이 한층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만족할 만큼의 협상한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표준계약(The Standard Contract)과 그 관련 조항에 근거한 합의를 맺게 되었다.

1. 중소기업 중앙회는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요구하는 체불임금 전액을 즉각 지불한다. 단, 이미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액수는 공제한다.
2.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은 그들의 고용주로부터 급여를 제때에 직접 받아야 한다.
3. 한국인 고용주들이 보관해 오던 여권은 즉각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에게 반환하고 그들이 보관토록 한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우호적 배려를 할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한다.
4. 중소기업 중앙회는 관계당국과 협의 후에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새로운 업체에 배정되도록 보장하고, 주44시간 및 초과근로에 대한 기본월급, 그리고 표준계약 외의 작업에 대해 그에 맞는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5. 중소기업 중앙회는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이 계약상의 정규근로가 끝난 후 합의 없이 자기의 사에 반하여 작업을 강요받지 않을 것, 그들의 근로 및 생활조건이 적대적이거나 폭력적이지 않을 것, 그리고 근로 후의 자유를 보장한다.
6. 네팔인 산업연수생들에게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치료혜택을 주어야 하고 신체부상 및 사망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7. 중소기업 중앙회는 위 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또한 네팔인 산업연수생들도 농성을 멈추고 본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즉시 농성장을 떠난다.
8. 본 합의문은 서명을 마친 즉시 발효된다.

서명일 : 1995. 1. 17

서명인 : 박상규
중소기업 중앙회장

서명인 : 네팔인 산업연수생 일동

다음은 농성해산을 마지막으로 공대위가 발표한 성명서의 요지이다.

외국인 노동자 농성해산에 즈음하여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개선과 연수생 인권개선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의 자유의지로 사태를 해결한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농성 해산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장과 연수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2, 제3의 파장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공대위는 이후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20일 '산업기술연수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근로조건에 대한 폭넓은 조사작업도 아울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가 원만하게 일단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관심을 기울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1995. 1. 18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가칭)[외국인 취업연수생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을 제안하며

1. 취지

1) 현재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들은 공장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도 직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있는 동안 한번도 임금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너무 많으며, 대부분 저임금 등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인력업체의 중간 횡포, 살인적인 폭행, 여성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성폭행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망칠까봐 여권까지도 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도망치지 않을 사태가 어디있겠습니까. 이러한 인권유린사태는 19세기 노예노동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2)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세계화를 주창하고 있는 문민정부의 인력정책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취업연수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 스스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부분적인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맴借此듯 내놓는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오히려 상황이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렇게 해서 한국 국민 모두는 자신도 모르게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공범이 되어 버렸으며, 이로 인해 동남아 일대에서는 한국인들이 '추악한 한국인'으로서 종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우리는 한국 국민 모두의 양심을 결고 조속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믿으며, 부끄럽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아래와 같이 [공동대책위]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2. 일시, 장소: 1995.1.12(목) 14:00 장소: 명동성당

3. 안건 : 공대위구성 및 대책마련 촉구

4. 대책방향

- 1)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 2) 자유로운 공장밖 출입보장
- 3) 여권 본인 소지 보장
- 4) 압류 및 미지급 임금 지불
- 5) 성폭행, 구타금지
- 6) 인력회사의 중간개입 배제
- 7)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백지화
- 8) 정부관련 부처의 사과
- 9) 취업연수제도 철폐, 본래취지대로 산업기술연수 실시
- 10) 외국인력수입시 노사합의(협약 체결), 국내노동자와 동등권리 보장

1995.1.9

< 상 담 사례 >

현 공대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상담소에서 직접 상담한 내용들을 정리한다. 보다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가 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이 얼마만큼 침해 당하는지 알수 있다(외국인 노동자 피난처, 천주교수원고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성남외국인노동자의 집,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중국노동자 센터에서 사례 발췌)

1. 네팔인 카란(29세)씨는 1994년 7월 24일 209명의 네팔인들과 함께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7월 26일 서울에서 35km 떨어져 있다는 사실만 알았지 도시 이름이 어딘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곳으로 친구 한명과 함께 배치되었다. 가족공장이었는데 가족 냄새가 몹시 나서 일하기 힘들었다. 물론 하루 일시간은 식사시간 외에 11시간으로 너무 힘들어 같이 간 친구는 1달 후에 어디론가 도망을 가고 자신은 계속 일했다. 그렇지만 일한후의 임금을 4달동안 한번도 받지 못하였고 네팔의 가족들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한국의 송출회사의 "전씨"에게 전화했지만 아무런 해명도 없었고, 물론 말도 통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만 자신이 받을 수 있어서 그 돈으로 도망나올 수 있었다.

2. 네팔인 팀부씨와 동료 129명은 8월 22일 아침 9시에 김포공장에 내렸다. 곧바로 협력단(KITCO)에서 주선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연수원으로 갔고 그 곳에서 2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한국말을 네팔 사람이 통역하였고 내용은 전철 안내, 일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식사문제들을 조금씩 들었을 뿐이다.

그날 오후 바로 사장님의 와서 친구들과 함께 10명을 안양의 어떤 공장으로 인솔 했으며 다음날 아침부터 일을 시작하였다. 한달이 지나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었는데 "전씨"가 약속한 임금 400불이 아니라 210불 이었다. "전씨"에게 즉각 만나자고 하여 항의했더니 열심히 일하고 잔업에 야근을 하면 400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이말을 다른 누구에게라도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 임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즉각 네팔로 돌려 보낸다고 하여 겁을 먹고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대로 돌려 보내지면 송출회사(Lumbini Oversea Ltd.)에 낸 돈 1,000불과 개인비용 400불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3. 스리랑카인 위제, 무투꾸다, 딜락, 살파는 8월 8일 56명의 스리랑카인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역시 2시간의 교육을 받고 안양의 공장으로 왔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다. 계속 사장님의 안 나오고 해서 협력단에 연락하였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있었다. 송출회사(동주무역)의 한국대표인 훼난도씨에게 연락해도 너무 바빠서 만날 수 없었다. 매월 10불씩 커미션을 내고 있었다. 사무실에 찾아가 한국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는 너무 친절하고 여관을 얻어서 재워주고 협력단에 연락하여 새로운 공장을 찾아주도록 했다. 이들은 양심껏 그들을 듣는 것 같다. 그런데 스리랑카에 있는 MACKINNON MACKENZIE & CO of Ceylon Ltd.에서 동주무역에서 다른 회사로 바꾸어 버렸다고 한다. 이제 그들은 문제가 있으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야 한다. 그들이 이들을 잘 도와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4. 스리랑카인 라자씨와 친구는 인천에 있는 화인씨키드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거처할 방이라는 것이 휴게실이었다. 한국사람들이 T.V를 보고 술마시고 노는 그런자리에서 잠을 자야 했다. "2명의 필리핀 노동자들에게는 방을 주었지만 자신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한국사람들이 때리고 괴롭히고 하여 더 생활할 수가 없었다. 한달 일한 돈을 받았는데 그 방에서 도둑을 당했다. 그래서 도망나왔다. 더운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샤워하는 습관이 있는데 시설이 없어 건의 했더니

공중목욕탕에서 가라고 했지만 돈이 어디있는가?"

5. 수원에 있는 전자회사에 온 3명의 스리랑카 여자 연수생들은 외부와의 관계를 전혀 가질 수 없도록 외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함께 온 친구들이 회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찾아오면 만날 수 있지만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어디도 갈 수 없는 실정이다. 전화통화도 자유롭지 못하다.

6. 만주씨는 인천의 한 공장에서 썬켓 보드를 만드는 일을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했다. 2교대 근무에 210불의 기본급과 임금수당을 약간 받았지만 정확하게 계산하여 받지 못했다. 또한 음식이 맞지 않아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했는데 식비 지급은 전혀 받지 못했다.

7. 수원시 소재 아주전자(한국인이 45명이나 되는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는 스리랑카인 5명은 2교대 근무에 한달에 80-90시간의 임금을 하고 있다. 210불의 수당을 받는데 90,000원 정도의 수당을 합쳐 총임금은 250,000원 정도이다.

8. 용인에 있는 플라스틱 공장에서 일하는 반다와 피야는 일근시 12시간, 야근시 13시간 일하는데 임금은 한달에 360,000원 정도다. 210불은 본국에 보내져 수당으로 받은 200불로 필요한 의류를 사고 나니 항상 돈이 없는 실정이다.

9. 스리랑카인 삼파드씨의 경우 연수수당 210불에서

10불: 송출회사로

44불: 한국외환은행에(도망가지 않고서 1년후 돌아갈 때 찾을 수 있는 돈)

75불: 실론은행에(1년후에 스리랑카에 무사히 도착한 후에 받을 수 있는 돈)

81불: 가족들에게

"한국에 다녀오기 위해 집을 담보로 하여 1500달러를 빌렸다. 실론은행으로 들어가는 75불을 일년 후에 찾아서 갚아야 하지만 당장 이자를 81불 내야 한다. 첫달 월급은 본국에 있는 회사로 전액 보내졌고 1년이 지나도 빚을 갚을 수 없기에 도망가고 싶지만 만약에 잡혀서 강제 송환당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에 월급이 작아도 할 수 없이 참고 있다. 어머니와 동생 4명의 생활비가 제대로 보내질 수만 있다면 좋겠다."

10. 스리랑카인 피야라트네씨는 일 시작한지 8일만에 프레스에 손가락이 잘렸다. 원손 4번째 손가락이 1/3 없어졌는데 2주간의 치료 후 곧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2주간 동안의 임금은 받았지만 어떤 보상이나 위로금을 받지 못하였다.

11. 필리핀 연수생 카만초씨는 93년도에 입국하였다. 르러사이에 손가락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른 손 2번째 손가락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다. 역시 연수생이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고 그 해 8월에 회사가 바뀌어 버렸다. 그는 거기서 그대로 일하고 있다.

12. 이란인 알리씨는 연수업체에서 나와서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오른손을 다쳤다. 산체를 신청하던 회사는 노동부로부터 서류가 반려되면서 연수생이기에 적용이 안된다는 답을 들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지내고 있다가 경찰에 잡혀 강제송환 당했다.

13. 일리쉬에르씨는 파키스탄 사람으로 역시 연수업체에서 나와 다른 사업장에서 일해 왔다. 쇠를 자르는 프레스에 원손이 눌려 손가락 모두를 잃게 되었다. 역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14. 필리핀인 에드가씨는 올해 2월에 원손 2번째 절반과 3-5번 손가락 전체를 잃었다. 치료비는 300만원이 들었는데, 상해보험으로 받은 400만원 중에서 치료비 100만원을 제하고 300만원만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15. 중국교포 허순필(41세, 남, 중국 요녕성)씨는 1993년 5월 12일 분당 건영아파트 2차 신축 현

장에서 일을 하던 중 14층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회사측은 처음 200만원부터 시작하여 최종 800만원을 제시하였다. 그 근거로는 분당의 다른 사업장의 경우 지금까지 사망사건에 대해서 보상액이 그 정도이기에 형평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그 돈도 중국에 가면 꽤 큰 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이 그 이전에는 적용이 되었지만 노동부장관 지침으로 보상을 금지하였기에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시간이 흘러 30일이 경과되자 회사측은 영안 실의 유족에게 공급하던 모든 식사를 일체 중단시키고 관계직원은 철수를 해 버리자 안타깝게 여긴 주변의 사람들이 본 성남외국인 노동자의 집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 결과

허순필씨 건은 현장 소장을 만나 원만한 타결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문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문전박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각계 요로에 상황을 호소하여 지원을 부탁하고, 성남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를 통해 k건설그룹 회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결국 5일이 지나 문전박대하던 소장이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여 3,200만원에 민사를 합의하고 노동부에는 산업재해보상 청구, 심사, 재심사를 거쳐 고등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여 산업재해 보상금 5,680만원을 수령하여 귀국하였다.

16. 필리핀인 에리엘 갈락(31세)씨도 위와 같은 시기에 경기도 광주군의 보온 덮개 생산공장에서 일을 하던 중 오른손 팔목 중간이 잘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회사에서는 450여 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서 더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통보해 왔다. 물론 산재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결과

에리엘 갈락씨의 건은 치료가 다 되었는데도 보상을 해 주지 못하겠다는 호소를 듣고 사장을 만나 보상금 1,400만원과 치료비 450만원, 합계 1,850만원을 받았고, 현재 산업재해보상이 추진 중에 있다.

17. 중국교포 류정기(63세)씨는 성남의 영세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던 중 오른손 손가락 4개가 절단되었다. 회사측은 접합수술을 통해 치료를 해 주었는데 얼마후 손가락이 통통 부어 오르고 통증이 오며 냄새가 나서 회사에 찾아 갔더니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보상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사장은 "당신 때문에 1차 치료비도 많이 들었고 심사가 혼란하여 나도 손해가 막심하니 더 이상의 치료나 보상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처음 상담소를 찾아 왔을 때 손가락은 오이 만큼씩 부어 올라 있고 붕대를 풀자 냄새가 진동하였다.

먼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입원을 시켜 절단 수술을 받아 4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부에서는 5인 이하 사업장으로서 산재 적용대상이 아니기에 산업재해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한다. 사장은 가진 재산이 없으니 필요하다면 공장의 사글세 보증금이나 노후된 사출기 전부(두 대)를 가져 가라고 하고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고 한다. 류정기 할아버지는 이제 중국의 가족에게는 빈손으로 돌아가 무엇이라 설명해야 하느냐며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여 "한국에서는 콩팥을 팔 수 있다는 데 방법을 소개를 해 달라"는 요청이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그럼 이대로 돌아가야만 하느냐?"고 읊음을 터뜨린다.

- 결과

류정기씨 건은 노동부의 산재보상이 거부되어 중앙관서 민원실을 통해 계속 산재 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상 가능성성이 적다. 사장 또한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고 외면하고 있고,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한다 해도 재판 실익이 없기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경찰서에 업무상 과실치상 등으로 고소를 했으나, 벌금 등의 처벌은 가능하지만 보상은 어렵다고 한다. 제벌그룹 회장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드는다고 하여 연락을 취했으나 개별적인 사안을 도울 수 없다고 한다. 어찌해야 할 것인가?

18. 농성참가자 삼영(주) 외국인 노동자 9명의 사례

1994년 7월 25일 입국한 이들은 13명의 동료 네팔노동자들과 함께 삼영(주)에 배치되어 일하게 되었다. 이들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통해서 1년 연수비자 자격을 얻어서 입국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송출해 온 인력회사는 중기협을 통해 선정된 네팔의 '룸비니 맨파워'이다.

그리고 룸비니 한국지부는 '동양인력개발(주)-사장 전영수, 양천구 소재'이다. 이들 13명은 입국하는 과정에서 인력회사에 1,300불씩을 수수료로 지불했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합하면 일인당 한국 입국과정에서 소모한 비용은 2,000불 정도였다.

이들이 호소해 온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가. 수수료를 이미 지불한 상태, 즉 한국 오기 하루 전날에야 월급이 210불이라고 인력회사는 번복을 하였다. 그러나 지불한 수수료 반환을 안해준다는 인력회사 측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입국하게 되었다.

나. 한국에 입국한 후 언어 등 어떤 종류의 적응 교육도 받지 못했다.

다. 210불의 임금 조차도 인력회사가 직접 회사로부터 받아가 버려서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식 임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라. 회사와 인력관리업체들에 의해서 여권이 압류당하고 감시, 강압 당하는 생활이 힘들다.

마. 회사 내의 한국인 노동자들에 의한 잦은 구타 바. 하루에 14시간 하는 장시간 노동이 너무 힘들다. 임금도 선택권이 전혀 없이 의무이다.

사.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

아. 잠자는 방이 인원에 비해 너무 좁다.

이들은 결국 이런 문제들을 겪다가 잦은 구타를 당하는 이 계기가 되어 94년 12월 27일 밤 회사에서 나왔다. 물론 노동자가 이동하는 것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이들은 신분상으로 취업연수생이라는 일할 수 있는 공장제한이 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된 것이다.

현재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한 사안은 이들을 폭행한 사람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와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내는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 제도개선에 대한 신문자료>

동아일보(1995. 1. 12)

외국인 「연수취업제」 도입

-교육 성과따라 채용, 법적권리 내국인과 동일-

노동부는 11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3개월이상 국내에서 연수교육한뒤 성과가 좋은 외국인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연내에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재 중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소속된 「산업기술연수협력단」을 분리 독립하거나 법무부 통상산업부 노동부등 관계부처가 공동참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은 3개월, 취업후 체재기간은 2년정도가 될 것"이라며 "연수비용은 사업주가 부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수취업제도는 이미 일본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일단 ○ 수후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은 낙기 인과 등등하게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부여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임금 및 고용조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동아일보(1995. 1. 13)

외국인 연수생 임금 본인통장 입금, 송출회사 착취방지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처우개선을 위해 그동안 이들의 임금을 중간착취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력송출회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한편 연수생들이 여권을 직접 소지도록 해 신원을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오후 노동부, 외무부, 법무부, 통상산업부 경찰청등 6개 관계부처 실무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연수생들에 대한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 기능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외국인 근로자 민원신고센타」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송출회사를 통해 지급되던 연수생들의 연수수당을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 송출회사등의 중간착취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연수계약서상의 비인도적 조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시정토록 적극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러나 연수생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는 문제등 근본적인 개선책은 금년 상반기까지 공청회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